

# 『유럽연합, 배터리 관련 폐기물 목록 업데이트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4. 11.

TBT 통보 여부	통보	HS Code	8506, 8507
통보국	유럽연합	전년도 수출규모 (천불)	1,895,828
작성기관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문의처	tbt@kotica.or.kr

## [ 목 차 ]

1. 규제 개요 .....	1
2. 제정 세부내용 .....	2
3. 관련 법령 및 표준 .....	5
붙임. 규제 참고자료 .....	6

# 1

## 규제 개요

- (도입배경 및 목적) 유럽연합(European Union, EU) 집행위원회에서는 폐배터리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의 기술 및 과학적 진보를 반영하기 위해 동 위임 결정안\*을 발표함

\* 동 제정안 채택 및 발효 시, 기존 규정(Decision - 2000/532/EC)은 동 제정안에 따라 개정됨

- (규제요지) 동 제정안에서는 진화하는 배터리 관련 폐기물 흐름의 식별 및 분류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 2000/532/EC에 명시된 폐기물 목록을 업데이트함

TBT 통보번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U/1090</li> </ul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통보일</td> <td>2024년 10월 15일</td> </tr> <tr> <td>고시일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	통보일	2024년 10월 15일	고시일	-
통보일	2024년 10월 15일					
고시일	-					
규제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터리 관련 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목록 업데이트에 대한 2000/532/EC 결정을 개정하는 위원회 위임 결정 초안</li> <li>Draft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amending Decision 2000/532/EC as regards an update of the list of waste in relation to battery-related waste</li> </ul>					
규제부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럽연합 집행위원회</li> <li>European Commission(EC)</li> </ul>					
요구사항 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배터리 업데이트 목록에 따른 기준 준수</li> </ul>					
제·개정 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정 초안</li> </ul>					
채택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5년 1월 1일</li> </ul>					
의견수렴 마감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4년 12월 14일</li> </ul>					
발효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U 관보 공표일로부터 20일</li> </ul>					
준수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효일로부터 18개월</li> </ul>					

-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배터리, 배터리 제조 폐기물 및 재활용 폐배터리 중간체 (위임 결정 부록에 신규 코드 제공)</li> <li>Waste batteries, battery manufacturing waste and intermediates from waste battery recycling(new codes available in the Annex of the Delegated Decision)</li> </ul>		
적용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문 [표 1] 참고</li> </ul>		
對발행국 수출액 (전년기준, 천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,895,828</li> </ul>	HS Cod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506, 8507</li> </ul>

## 2

## 제정 세부내용

### □ (제정 세부내용)

- (개요)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폐배터리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의 기술 및 과학적 진보를 반영하기 위해 동 위임 결정안\*을 발표함

\* 동 제정안 채택 및 발효 시, 기존 규정(Decision - 2000/532/EC)은 동 제정안에 따라 개정됨

- 동 제정안에서는 진화하는 배터리 관련 폐기물 흐름의 식별 및 분류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 2000/532/EC에 명시된 폐기물 목록을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함

- (폐기물 목록 업데이트) 동 제정안에 따라 기존 규정(Decision - 2000/532/EC)은 아래 [표 1]과 같이 개정됨

[표 1] 신규대조표

현행(Decision - 2000/532/EC)		개정안		비고
09 01 11*	16 06 01, 16 06 02 또는 16 06 03에 포함된 배터리가 들어 있는 일회용 카메라	09 01 11*	16 06 01~16 06 04, 16 06 07~16 06 11 또는 16 06 14에 포함되며, 배터리가 들어 있는 일회용 카메라	개정
(신설)	(신설)	10 08 21*	유해물질을 함유한 리튬-기반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슬래그	신설
(신설)	(신설)	10 08 22	10 08 21에 언급된 것 외의 리튬-기반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슬래그	
(신설)	(신설)	10 08 23*	10 08 21에 언급된 것 외의 리튬-기반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슬래그	
(신설)	(신설)	10 08 24	10 08 23에 언급된 것 외의 페니켈 기반 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슬래그	
(신설)	(신설)	10 08 25*	10 04 01, 10 08 21 및 10 08 23을 제외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기타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슬래그	
(신설)	(신설)	10 08 26	10 08 25에 언급된 것 외의 기타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슬래그	
<b>16 06</b>	<b>배터리 및 축전지</b>	<b>16 06</b>	<b>배터리 제조, 공급 및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</b>	개정 및 신설
16 06 01*	납 배터리	16 06 01*	폐납축배터리	
16 06 02*	니켈-카드뮴 배터리	16 06 02*	니켈-카드뮴 폐배터리	
16 06 03*	수은 포함 배터리	16 06 03*	수은 포함 폐배터리	
16 06 04*	알칼리성 배터리(16 06 03에 언급된 것 제외)	16 06 04*	알칼리성 폐배터리(16 06 03에 언급된 것 제외)	
16 06 05	기타 배터리 및 축전지	16 06 05	현행과 동일	
16 06 06*	배터리 및 축전지에서 분리수거한 전해액	16 06 06*	폐배터리에서 분리수거한 전해액	
(신설)	(신설)	16 06 07*	리튬-기반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16 06 08*	16 06 02에 언급된 것 외의 니켈-기반 폐배터리(예: NiMH, Na-NiCl <sub>2</sub> )	
(신설)	(신설)	16 06 09*	은산화 배터리를 포함한 아연-기반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16 06 10*	유해물질을 함유한 나트륨-기반 폐배터리(16 06 11 제외)	
(신설)	(신설)	16 06 11*	나트륨황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16 06 12	기타 나트륨-기반 폐배터리	

현행 (Decision - 2000/532/EC)		개정안		비고
(신설)	(신설)	16 06 13*	분류되지 않은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16 06 14*	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16 06 15	16 06 14에 언급된 것 외에 달리 지정되지 않은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16 06 22*	유해물질을 함유한 납산 배터리 제조 폐기물(예: 납 페이스트, 납 스크랩)	
(신설)	(신설)	16 06 23	16 06 22에 언급된 것 외의 납산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24*	유해물질을 함유한 리튬계 배터리 제조 폐기물(예: 양극 절단부, 양극 슬러리)	
(신설)	(신설)	16 06 25	16 06 24에 언급된 것 외의 리튬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(예: 양극 절단부)	
(신설)	(신설)	16 06 26*	유해물질(예: 액체 및 고체 양극 물질)을 함유한 니켈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27	16 06 26에 언급된 것 외의 니켈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28*	유해물질을 함유한 알칼리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29	16 06 28에 언급된 것 외의 알칼리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30*	유해물질을 함유한 아연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31	16 06 30에 언급된 것 외의 아연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32*	유해물질을 함유한 나트륨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33	16 06 32에 언급된 것 외의 나트륨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34*	16 06 22, 16 06 24, 16 06 26, 16 06 28, 16 06 30 및 16 06 32에 언급된 것 외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6 06 35	16 06 23, 16 06 25, 16 06 27, 16 06 29, 16 06 31 및 16 06 33에 언급된 것 외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19 02 11*	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	(삭제)	(삭제)	
(신설)	(신설)	19 02 12*	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중금속을 함유한 고체염 및 용액	신설
(신설)	(신설)	19 02 13*	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9 14	폐배터리 처리 및 배터리 제조 폐기물의 중간 분획물	신설
(신설)	(신설)	19 14 01*	폐납축배터리의 열적/기계적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중간 분획물 및 전극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납축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9 14 02*	리튬-기반 폐배터리의 열적/기계적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중간 분획물 및 전극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리튬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9 14 03*	니켈-기반 폐배터리의 열적/기계적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중간 분획물 및 전극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니켈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9 14 04*	알칼리-기반 폐배터리의 열적/기계적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중간 분획물 및 전극 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알칼리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
현행 (Decision - 2000/532/EC)		개정안		비고
(신설)	(신설)	19 14 05*	아연-기반 폐배터리의 열적/기계적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중간 분획물 및 전극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아연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신설
(신설)	(신설)	19 14 06*	나트륨-기반 폐배터리의 열적/기계적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중간 분획물 및 전극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나트륨-기반 배터리 제조 폐기물	
(신설)	(신설)	19 14 07*	19 14 01~19 14 06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터리 제조 폐기물의 열적/기계적 처리에서 발생하는 중간 분획물 및 전극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19 14 08	폐배터리 재활용 합금(대량 형태)	
20 01 33*	16 06 01, 16 06 02 또는 16 06 03에 포함된 배터리 및 축전지 및 이러한 배터리를 포함하는 분류되지 않은 배터리 및 축전지	(삭제)	(삭제)	삭제
20 01 34*	20 01 33에 언급된 것 외의 배터리 및 축전지	(삭제)	(삭제)	
(신설)	(신설)	20 01 42*	16 06 01~16 06 04, 16 06 08~16 06 11 또는 16 06 14에 포함된 폐배터리 및 16 06 07을 포함한 해당 폐배터리를 포함하는 분류되지 않은 폐배터리	신설
(신설)	(신설)	20 01 43*	16 06 07에 포함된 리튬-기반 폐배터리	
(신설)	(신설)	20 01 44	20 01 42 및 20 01 43에 언급된 것 외의 폐배터리	

- (경과조항) 동 제정안은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째에 발효되나,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변경된 폐기물 분류체계 관련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부터 적용됨
- 배터리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조적 및 운영적 변경을 위한 폐기물 허가 조정, 제출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아래 [표 2]와 같이 경과조치를 부여함

[표 2] 동 제정안

<p><b>제1조</b> 규정 2000/532/EC의 부속서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된다.</p> <p><b>제2조</b>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째에 발효된다. 본 규정은 [OP, 날짜를 입력한다 =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후]부터 적용된다.</p> <p><b>제3조</b> 본 규정은 그 자체가 완전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.</p>
---

(관련 법령)

- Commission Decision 2000/532/EC<sup>1)</sup>

---

1) 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CELEX%3A02000D0532-20231206>

(규제원문 출처)

- ePing SPS&TBT Platform

- 원문링크: [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EEC/24\\_06746\\_01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EEC/24_06746_01_e.pdf), [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EEC/24\\_06746\\_00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EEC/24_06746_00_e.pdf)